

# 학과 개폐 및 과원에 관한 규정

제정 2013.11.06.

개정 2017.05.11.

**제1조(목적)** 본 규정은 순천제일대학교(이하 ‘본 대학교’ 이라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과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학과의 신설 및 폐지와 학과교원 과원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.

**제2조(정의)** ① 학과폐지라 함은 신입생 등록인원 미달 등으로 학과 강좌를 개설하지 아니 하는 것을 말한다.

② 과원이라 함은 입학 정원의 감축 등으로 인한 학과의 재학생 대비 교수 확보율이 대학 전체 교수확보율 이상의 학과 전임교원을 말한다.

**제3조(학과 신설 및 변경)** ① 학과의 신설은 해당 교수가 신청 할 수 있으며, 학과 명칭변경은 학과장이 학과 신설(변경)계획서를 기획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학과의 신설 여부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교무위원회의 심의, 대학평의원회의 심의,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.

③ 학과의 명칭변경은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총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다.

**제4조(심의위원회)** 학과의 개폐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는 총장이 교원 6인 이내로 위촉하고 기획처장은 당연직으로 위원장이 된다.

**제5조(재학생 보유율 및 신입생 충원율)** ① 재학생 보유에 대한 학과 평가는 학과별 재학생(매년 4.1자 기준 재학생 + 10.1자 기준 재학생)/2/모집정원\*(가중치(학과별 재학생수(학년별 재학생평균의 합)/전임교수 수))/40\*100으로 한다.

② 재학생 및 전임교수 수는 매년 4월1일자(1학년은 입학관리처 자료) 및 10월1일자 의 한국교육개발원 보고 자료를 기준으로 평균값을 적용한다.

③ 신입생 충원율은 정원내 및 정원외를 포함한 당해 연도 신입생 충원율을 적용한다.

**제6조(학과 입학정원)** ① 학과 및 계열 입학정원은 학과평가 결과에 따라 매년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학과 및 계열 입학정원 조정을 위한 학과평가는 매년 4월1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지표를 활용하여 기획처에서 시행하되, 학과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[별표 1]에

의해 평가한다.

1. 신입생충원율
  2. 재학생보유율
  3. 졸업생취업률
  4. 향후 전공 관련 산업전망
  5. 편제정원 대비 교원 수
- ③ 감축된 인원은 신설학과 및 기존학과 증원에 배정한다.
- ④ 학과 및 전공의 최소 정원 내 입학정원은 30명으로 한다.

**제7조(학과 폐지)**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학과를 폐지할 수 있다.

1. 2년 연속 신입생 정원내 및 정원의 충원율이 모집정원의 80% 미만인 경우
2. 당해 연도 신입생 정원내 및 정원의 충원율이 50% 미만인 경우
3. 재학생(정원내 및 정원외) 보유율이 2년 평균 60%미만인 경우
4. 대학 구조조정계획에 의거 학과를 통폐합해야할 경우
5. 학과 교수회에서 학과의 폐지를 신청할 경우

**제8조(학과 폐지 절차)** ① 제7조에 의거 학과의 폐지는 매년 1학기중에 실시한다.

- ② 기획처는 매년 학과 평가점수를 산출하여 공개하고, 매년도의 평가 결과가 제7조에 해당 할 우려가 있는 학과에 대해서는 문서로 예비 경고 조치를 한다.
- ③ 학과의 폐지 여부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교무위원회의 심의, 대학평의원회의 심의,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. 심의기준은 별표1의 평가표에 따른다.
- ④ 대학의 특성화 및 장기발전계획에 의해 학과 폐지를 유예할 수 있다.

**제9조(폐지된 학과의 운영)** ① 폐지된 학과의 차년도 신입생은 모집·선발하지 아니 한다.

- ② 학과의 폐지가 결정된 경우에도 해당 학과의 재학생 및 복학생이 졸업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- ③ 신설학과의 경우에는 2년 유예 후 3년차부터 규정을 적용한다.

**제10조(학과폐지로 인한 교원 및 과원 교원의 신분)** ①학과폐지 및 과원 학과 소속의 전임교원은 교원소속을 변경하거나, 전공전환 등을 통하여 타 학과로 배치 또는 신설학과를 제안할 수 있다.

- ② 과원학과 소속의 전임교원 중 교원소속 변경에 해당하는 자는 교원업적평가 등에 의한다.
- ③ 교원소속변경과 전공전환 규정은 따로 정한다.
- ④ 제①항에 의거 교원소속변경, 전공전환, 신설학과 제안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권면직을 적용할 수 있다.

⑤ 제④항의 직권면직 이라함은 직제와 학과의 개폐, 과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되었을 때를 말한다.

⑥ 제⑤항에 의하여 임명권자가 면직을 시킬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. (2013.11.6. 제정·공포, 2013.12.20. 시행)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학과 폐지 심의기준

심의기준	배점	세부기준
신입생 충원율	20	최근 2년간 신입생 충원율×0.2
재학생 보유율	20	최근 2년간 재학생 보유율×0.2
취업률	20	건강 DB취업률×0.2
향후 전공 관련 산업전망	30	정성평가
편제정원 대비 교원 수	10	편제정원/교원수/40×10
합계	100	